

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(제11조의2 관련)

구분	단위	기준	
길이 (원형인 경우에는 지름)	mm	40 이하	
저위발열량	kcal/kg	3,000 이상 (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,000 이상)	
수분	%	20 이하	
회분	%	30 이하	
황분	%	2 이하	
금속 성분	수은(Hg)	mg/kg	1.2 이하
	카드뮴(Cd)		9.0 이하
	납(Pb)		200.0 이하
	크로뮴(Cr)		70.0 이하

※ 비고

1. 성형제품의 형태는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.
2. 저위발열량(低位發熱量: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)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3. 회분[灰分: 유기질이 회화(灰化)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], 황분(黃分: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,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),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%를 초과할 수 있다.